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환경부 자료 제공 -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주요내용

가. 주의사항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8→1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조제3호가목3)다)).

나.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표시를 소비자를 위한 주의문구 조항으로 위치 이동(안 제6조제1호타목).

다.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식품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문구 표시토록 함(안 제6조제1호파목).

라.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만 납품 판매되는 제품에 스티커를 사용하여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호아목).

마.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맹점에 제조·가공, 조리 등의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8호).

바.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및 성분에 아황산염(SO₂로 10mg/kg 이상인 경우)을 추가함(안 제9조

관련 별지 1 제1호가목7)라)).

사.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기준의 의무 영양성분 이외 영양성분표에 표시할 수 있는 영양성분의 대상을 '영양소기준치표'의 영양성분으로 명확히 함(안 제9조 관련 별지 1 제1호가목9)나)(7)).

아. 영양소 비교강조 표시기준 중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대량영양소'와 '미량영양소'에 해당하는 영양소 종류를 구체화함(안 제9조 관련 별지 1 제1호가목9)마)(2)(나)).

자. 다류와 커피를 포함하여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식품에 대하여 "고카페인함유" 및 카페인 함량을 "000 mg"으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9조 관련 별지 1 제1호가목10)아)).

차. 만성소화장애증 환자 등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이 식품 섭취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밀, 호밀, 보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글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제품의 경우 무글루텐(Gluten-free)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관련 별지 1 제1호가목10)차)).

카. 내용량의 표시에 있어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를 식품유형별에서 중량과 용량단위로 정함(안 제10조 관련 별지 2).

타. 1회 제공량 설정 통보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9조 관련 별지 1 제1호가목9)다)(5) 관련 별지 3 제2호).

파.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2010년도 공표된 것으로 현행화함(안 제9조 관련 별지 1 제1호가목9)라)(2)(사)④ 관련 표 1의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표시기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를 "식품위생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로 하고 "영 제7조"를 "영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3호가목 3) 기타표시면의 활자크기(포인트)란을 한다.

"	다) 주의사항표시	8이상	"를	"	다) 주의사항표시	10 이상	"으로,
---	-----------	-----	----	---	-----------	-------	------

제6조제1호타목 및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파. 카페인 함량을 ml 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포장과 법률

아.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여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만 납품 판매되는 제품으로써 “식품접객업소용” 또는 “집단급식소용”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하는 표시사항 중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

제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점에 제조·가공,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

별지 1 제1호가목7)라)중 “토마토를”을 “토마토, 아황산염(SO₂로 10mg/kg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로 한다.

별지 1 제1호가목9)나)(7)중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을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 2 영양소 기준치표의 영양성분”으로 한다.

별지 1 제1호가목9)마)(2)(나)중 “열량 및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대량영양소)”를 “열량,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으로 하고, “적게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미량영양소)”를 “나트륨을 제외한 표 2 영양소 기준치표에서 정한 비타민 및 무기질”로 한다.

별지 1 제1호가목10)아)중 “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류와 커피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와 이와 나란히 카페인 함량을 “000 mg”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1 제1호가목10)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밀, 호밀, 보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Gluten-free)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별지 1 3.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중 17) 커피의 식품유형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7) 커피	가) 볶은커피	“를 “	17) 커피	“으로,
	나) 인스턴트커피			
	다) 조제커피			
	라) 액상커피			

별지 1 3.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중 18) 음료류 중 가) 기타음료의 개별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기타 음료	6) 기타음료 가) 식품의 유형에 따라	“를 “	가) 기타 음료	6) 기타음료 가) 식품의 유형에 따라	“으로,

혼합음료, 추출음료 또는 음료베이스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혼합음료 또는 음료베이스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	-----------------------------

별지 1 3.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중 29) 기타식품류 중 파)밀가루의 개별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파) 밀가루	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기타 밀가루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밀가루의 경우 밀가루 다음에 괄호로 “강력밀가루”, “중력밀가루”, “박력밀가루” 및 “해당등급(1,2,3등급)”을 추가 표시하여야 한다.	“를 “	파) 밀가루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기타 밀가루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으로,
----------	--	------	--------	---------------------------------------	------

별지 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

적용 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중량	5g 이상 50g 이하	9%
	50g 초과 100g 이하	4.5g
	100g 초과 200g 이하	4.5%
	200g 초과 300g 이하	9g
	300g 초과 500g 이하	3%
	500g 초과 1kg 이하	15g
	1kg 초과 10kg 이하	1.5%
	10kg 초과 15kg 이하	150g
	15kg 초과	1%
	용량	5mL 이상 50mL 이하
50mL 초과 100mL 이하		4.5mL
100mL 초과 200mL 이하		4.5%
200mL 초과 300mL 이하		9mL
300mL 초과 500mL 이하		3%
500mL 초과 1L 이하		15mL
1L 초과 10L 이하		1.5%
10L 초과 15L 이하		150mL
15L 초과		1%

* %로 표시된 허용오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별지 3 제2호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다음의 사항을”을 “다음의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서식을 신설한다.

1회 제공량 설정 통보서				
제조(수입) 업체	① 명칭(상호)		② 대표자	
	③ 소재지			
통보인	④ 성명			
	⑤ 부서명	⑥ 연락처	전화 :	
대상 식품	⑦ 제품명	⑧ 식품유형		
	⑨ 포장 · 판매단위			
	⑩ 1회 제공량			
	⑪ 설정 사유			
<p>「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상기식품의 1회 제공량을 별도 설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통보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p>				
<p>※ 첨부자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성분배합비율 2. 제품 또는 그 제품의 사진 3. 1회 제공량 당 영양성분 				

표 1의2 한국인영양섭취기준을 2005년도 기준에서 2010년도 기준으로 교체하여 현행화한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호아목 및 제8조제8호의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

현행	개정안												
<p>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등은 다음과 같다.</p> <p>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p> <p>가.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다만, 식용얼음의 경우에는 5킬로그램이하의 포장 제품에 한한다.</p> <p>나. 영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하는 식품첨가물</p> <p>다. 영 제7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소분업으로 신고를 하여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p>	<p>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등은 다음과 같다.</p> <p>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p> <p>가.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다만, 식용얼음의 경우에는 5킬로그램이하의 포장 제품에 한한다.</p> <p>나. 영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하는 식품첨가물</p> <p>다.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소분업으로 신고를 하여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p>												
<p>제5조(표시방법)</p> <p>1.~3. (생략)</p> <p>가.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p> <p>1) ~ 2) (생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표시장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표시사항</th> <th style="text-align: center;">활자크기 (포인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기타 표시면</td> <td>가) ~ 나) (생략) 다) 주의사항 표시 라) (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 8 이상 (생략)</td> </tr> </tbody> </table>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 (포인트)	3) 기타 표시면	가) ~ 나) (생략) 다) 주의사항 표시 라) (생략)	(생략) 8 이상 (생략)	<p>제5조(표시방법)</p> <p>1.~3. (현행과 같음)</p> <p>가.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p> <p>1) ~ 2)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표시장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표시사항</th> <th style="text-align: center;">활자크기 (포인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기타 표시면</td> <td>가)~나) (현행과 같음) 다) 주의사항 표시 라) (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 10 이상 (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 (포인트)	3) 기타 표시면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주의사항 표시 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이상 (현행과 같음)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 (포인트)											
3) 기타 표시면	가) ~ 나) (생략) 다) 주의사항 표시 라) (생략)	(생략) 8 이상 (생략)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 (포인트)											
3) 기타 표시면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주의사항 표시 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이상 (현행과 같음)											
<p>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p> <p>1. 식품</p> <p>가. ~ 카.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p> <p>1. (생략)</p> <p>2. (생략)</p> <p>가. ~ 사. (생략)</p> <p><신 설></p>	<p>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p> <p>1. 식품</p> <p>가. ~ 카. (현행과 같음)</p> <p>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파. 카페인 함량을 ml 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p> <p>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사. (현행과 같음)</p> <p>아.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여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만 납품 판매되는 제품으로써 “식품접객업소용” 또는 “집단급식소용”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하는 표시사항 중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의</p>												



현행	개정안
<p>3~7. (생략) 〈신설〉</p>	<p>표시</p> <p>3~7. (현행과 같음)</p> <p>8.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점에 제조·가공,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p>
<p>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 1) ~ 6) (생략)</p>	<p>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 1) ~ 6) (현행과 같음)</p>
<p>7) 원재료명 및 함량 가) ~ 다) (생략) 라)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하거나 이들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계란을 함유한 과자 : 계란, 계란을 원료로 하여 추출한 난황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과자 : 난황(계란), 계란이나 난황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과자를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 : 계란·난황(계란), 식품첨가물 : 카제인나트륨(우유), 레시틴(대두) 등]</p>	<p>7) 원재료명 및 함량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SO₂로 10mg/kg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함유하거나 이들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계란을 함유한 과자 : 계란, 계란을 원료로 하여 추출한 난황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과자 : 난황(계란), 계란이나 난황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과자를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 : 계란·난황(계란), 식품첨가물 : 카제인나트륨(우유), 레시틴(대두) 등]</p>
<p>8) (생략) 9) 영양성분 등 가) (생략) 나) (1) ~ (6) (생략) (7)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p>	<p>8) (현행과 같음) 9) 영양성분 등 가) (현행과 같음) 나)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 2] 영양소 기준치표의 영양성분</p>
<p>다) ~ 라) (생략) 마) 영양강조표시기준 (1) (생략) (2) (생략) 가) (생략)</p>	<p>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영양강조표시기준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나) 영양소의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열량 및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대량영양소)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적게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미량영양소)의 경우는 최소 1일 권장량의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p>	<p>(나) 영양소의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열량,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나트륨을 제외한 (표 2) 영양소 기준치표에서 정한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는 최소 1일 권장량의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p>																					
<p>10) 기타 표시사항 가) ~ 사) (생 략) 아)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액체식품은 카페인 함량이 <i>ml</i>당 0.15mg이상 함유한 경우에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류와 커피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조항 삭제></p>	<p>10) 기타 표시사항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액체식품은 카페인 함량이 <i>ml</i>당 0.15mg이상 함유한 경우에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이와 나란히 카페인 함량을 “000mg”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차)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차) 밀, 호밀, 보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Gluten-free)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p>3.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1) ~ 16) (생 략)</p> <table border="1" data-bbox="168 1137 676 1498"> <thead> <tr> <th colspan="2">식품유형</th> <th>개별표시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17) 커피</td> <td>가) 볶은커피<삭제></td> <td rowspan="4">(생 략)</td> </tr> <tr> <td>나) 인스턴트커피<삭제></td> </tr> <tr> <td>다) 조제커피<삭제></td> </tr> <tr> <td>라) 액상커피<삭제></td> </tr> <tr> <td>18) 음료류</td> <td>바) 기타음료</td> <td>6)기타음료 가) 식품의 유형에 따라 혼합음료, 추출음료 또는 음료베이스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td> </tr> </tbody> </table>	식품유형		개별표시기준	17) 커피	가) 볶은커피<삭제>	(생 략)	나) 인스턴트커피<삭제>	다) 조제커피<삭제>	라) 액상커피<삭제>	18) 음료류	바) 기타음료	6)기타음료 가) 식품의 유형에 따라 혼합음료, 추출음료 또는 음료베이스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p>3.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1) ~ 16) (생 략)</p> <table border="1" data-bbox="745 1137 1253 1498"> <thead> <tr> <th colspan="2">식품유형</th> <th>개별표시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17) 커피</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18) 음료류</td> <td>바) 기타음료</td> <td>6)기타음료 가) 식품의 유형에 따라 혼합음료, 추출음료 또는 음료베이스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td> </tr> </tbody> </table>	식품유형		개별표시기준	17) 커피		(현행과 같음)	18) 음료류	바) 기타음료	6)기타음료 가) 식품의 유형에 따라 혼합음료, 추출음료 또는 음료베이스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유형		개별표시기준																				
17) 커피	가) 볶은커피<삭제>	(생 략)																				
	나) 인스턴트커피<삭제>																					
	다) 조제커피<삭제>																					
	라) 액상커피<삭제>																					
18) 음료류	바) 기타음료	6)기타음료 가) 식품의 유형에 따라 혼합음료, 추출음료 또는 음료베이스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유형		개별표시기준																				
17) 커피		(현행과 같음)																				
18) 음료류	바) 기타음료	6)기타음료 가) 식품의 유형에 따라 혼합음료, 추출음료 또는 음료베이스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포장과 법률

현 행		개 정 안	
19) ~ 28) (생 략)		19) ~ 28) (생 략)	
29) 기타식품류	파) 밀가루	29) 기타식품	파) 밀가루
	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기타밀가루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밀가루의 경우 밀가루 다음에 괄호로 “강력밀가루”, “중력밀가루”, “박력밀가루” 및 해당등급(1,2,3 등급)을 추가 표시하여야 한다.		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기타밀가루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		별지 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	
식품종류	품 목	표 시 된 양	허용오차
과자류, 빵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 품류 또는 초콜릿류	과자, 캔디류, 추잉껌, 초콜릿류, 빵류	10g이하 10g초과 30g이하 30g초과 50g이하 50g초과 300g이하 300g초과 500g이하 500g초과	11% 9% 7% 5% 4% 3%
설 탕 포도당	설탕(각설 탕 제외), 포도당	200g이하 200g초과 1,000g이하 1,000g초과	4g 2% 1%
엿 류	물엿	500g이하 500g초과	4g 2%
식육가공품 어육가공품	식육제품, 식육가공품, 어육	100g이하 100g초과 1,000g이하 1,000g초과	2g 2% 1%
두 부	두부	제품에 표시된 양	10%
식용유 지류	대두유, 채 종유, 미강유, 압착참기름, 압착들기름, 식용유지	200g 또는 200ml이하 200g초과 2,000g이하 2,000g초과	4ml 3% 2%
	마가린	200g이하 200g초과	4g 2%
	쇼트닝	500g이하 500g초과 2,000g이하 2,000g초과	15g 3% 2%
면 류	유탕면류	제품에 표시된 양	5%
	유탕면을	200g이하	6g

적용 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중량	5g 이상 50g 이하	9%
	50g 초과 100g 이하	4.5g
	100g 초과 200g 이하	4.5%
	200g 초과 300g 이하	9g
	300g 초과 500g 이하	3%
	500g 초과 1kg 이하	15g
	1kg 초과 10kg 이하	1.5%
용량	10kg 초과 15kg 이하	150g
	15kg 초과	1%
	5mL 이상 50mL 이하	9%
	50mL 초과 100mL 이하	4.5mL
	100mL 초과 200mL 이하	4.5%
	200mL 초과 300mL 이하	9mL
	300mL 초과 500mL 이하	3%
용량	500mL 초과 1L 이하	15mL
	1L 초과 10L 이하	1.5%
	10L 초과 15L 이하	150mL
	15L 초과	1%

* %로 표시된 허용오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현 행				개 정 안
식품종류	품 목	표 시 된 양	허용오차	
	제외한 면류	200g초과	3%	
다 류 커피	침출차, 고행차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100g이하	3g	
		100g초과 500g이하	3%	
		500g초과	2%	
음료류	탄산음료	200ml이하 세입자	6ml	
		200ml초과 500ml이하	3%	
		500ml초과	2%	
	음료베이스중 분말제품	100g이하	3g	
		100g초과 500g이하	3%	
		500g초과	2%	
과일·채소류 음료, 유산균음 료, 혼합음료	200ml이하	4ml		
	200ml초과	2%		
장 류	메주·된장· 조미된장· 고추장·조미 고추장·춘장 ·청국장· 혼합장,	1,000g이하	20g	
		1,000g초과 5,000g이하	2%	
		5,000g초과	1%	
	한식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 장, 혼합간장	200ml이하	4ml	
200ml초과		2%		
조미식품	소스류	100ml이하	2ml	
		100ml초과 1,000ml이하	2%	
		1,000ml초과	1%	
	토마토케첩	100g이하	3%	
		100g초과 1,000g이하	3%	
		1,000g초과	2%	
고춧가루· 후춧가루	50g이하	1.5g		
	50g초과	3%		
카레· 겨자 등	50g이하	2g		
	50g초과 100g이하	4%		
	100g초과	2%		
드레싱	마요네즈, 드레싱	100g이하 100g초과	3g 3%	
주 류	발효주	200ml이하	6ml	
		200ml초과	3%	



현행				개정안
식품종류	품 목	표 시 된 양	허용오차	
식품첨가물	글루타민산나트륨·이노신산나트륨·구아닐산나트륨·5-리보뉴클레오티드혼합조미료	50g이하 50g초과	1.5g 3%	
	농·수산물	제품에 표시된 양	5%	
	과채류, 근채류, 향신식물	"	3%	
	서류, 두류, 곡류, 과실류	"	2%	
기타식품 및 식품첨가물	해당되지 아	50g(ml)이하	4%	
	해당되지 아	50g(ml)초과		
	니한 식품 및	100g(ml)이하	3%	
	식품첨가물	100g(ml)초과		
		1000g(ml)이하	2%	
		1000g(ml)초과	1%	
<p>별지 3 회 제공기준량</p> <p>1. (생 략)</p> <p>2. 그 밖에 제1호에서 적용할 수 없는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p> <p>제1호에 따라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을 적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1회 제공기준량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에는 제품 생산 개시전이나 수입신고전에 <u>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삭 제〉【제출서류】</p> <p>① 대상식품(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등)</p> <p>② 목적(신설 또는 변경)</p> <p>③ 첨부자료</p> <p>㉠ 주요성분 배합비율</p> <p>㉡ 샘플용으로 만든 제품 또는 그 제품의 사진</p> <p>㉢ 영양성분</p> <p>㉣ 그 밖에 해당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 설정을 위한 근거자료 등</p>				<p>별지 3 회 제공기준량</p> <p>1. (현행과 같음)</p> <p>2. 그 밖에 제1호에서 적용할 수 없는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p> <p>제1호에 따라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을 적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1회 제공기준량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에는 제품 생산 개시전이나 수입신고전에 <u>다음의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연 행	개 정 안																																																
<p>표 1의 2 한국인 영양섭취기준(2005년) (생 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회 제공량 설정 통보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5%;">제조(수입)업체</td> <td style="width: 15%;">① 명칭(상호)</td> <td style="width: 15%;">② 대표자</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td> <td>③ 소재지</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통보인</td> <td>④ 성명</td> <td></td> <td></td> </tr> <tr> <td>⑤ 부서명</td> <td>⑥ 연락처</td> <td>전화 :</td> </tr> <tr> <td rowspan="4">대상 식품</td> <td>⑦ 제품명</td> <td>⑧ 식품유형</td> <td></td> </tr> <tr> <td colspan="3">⑨ 포장 · 판매단위</td> </tr> <tr> <td colspan="3">⑩ 1회 제공량</td> </tr> <tr> <td colspan="3">⑪ 설정 사유</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상기식품의 1회 제공량을 별도 설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td> </tr> <tr> <td colspan="4"> ※ 첨부자료 1. 주요성분배합비율 2. 제품 또는 그 제품의 사진 3. 1회 제공량 당 영양성분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서식 신설>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표 1의 2 한국인 영양섭취기준(2010년) (생 략) </td> </tr> </tbody> </table>	1회 제공량 설정 통보서				제조(수입)업체	① 명칭(상호)	② 대표자			③ 소재지			통보인	④ 성명			⑤ 부서명	⑥ 연락처	전화 :	대상 식품	⑦ 제품명	⑧ 식품유형		⑨ 포장 · 판매단위			⑩ 1회 제공량			⑪ 설정 사유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상기식품의 1회 제공량을 별도 설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첨부자료 1. 주요성분배합비율 2. 제품 또는 그 제품의 사진 3. 1회 제공량 당 영양성분				<서식 신설>				표 1의 2 한국인 영양섭취기준(2010년) (생 략)			
1회 제공량 설정 통보서																																																	
제조(수입)업체	① 명칭(상호)	② 대표자																																															
	③ 소재지																																																
통보인	④ 성명																																																
	⑤ 부서명	⑥ 연락처	전화 :																																														
대상 식품	⑦ 제품명	⑧ 식품유형																																															
	⑨ 포장 · 판매단위																																																
	⑩ 1회 제공량																																																
	⑪ 설정 사유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상기식품의 1회 제공량을 별도 설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첨부자료 1. 주요성분배합비율 2. 제품 또는 그 제품의 사진 3. 1회 제공량 당 영양성분																																																	
<서식 신설>																																																	
표 1의 2 한국인 영양섭취기준(2010년) (생 략)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